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887	정부	2024.10.24.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07119	박상웅의원	2024.12.3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3		2207987	김교흥의원	2025.2.7.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4		2208897	이인선의원	2025.3.1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5		2209695	권향엽의원	2025.4.1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6		2210186	김성원의원	2025.4.28.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 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내 중심의 점검·관리 체계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규제자유특구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 부족,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44조제6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72조제4항 신설)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4조

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마. 규제자유특구 기간만료 및 지정해제 이후에도 해당 특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관리,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신설).

바.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97조의2 신설).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에 대해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함(안 제141조의4제2호 신설 및 제141조의5 신설).

차.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특구계획의 수립,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41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서”를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6조제4항 후단 중 “있다”를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을”을 “제7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까지에서”를 “제10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제4항 전단 중 “제86조제9항에”를 “제86조제10항에”로 하고, 같

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에도”를 “제10항에도”로 한다.

제89조제1항제3호 중 “제86조제10항에”를 “제86조제11항에”로 한다.

제90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전단 중 “제8항에”를 “제9항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7항을”을 “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에”를 각각 “제1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본문 중 “제13항에”를 “제1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까지에서”를 “제16항까지에서”로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1조의4 중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제4장에 제141조의5 및 제14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43조제1항제4호 중 “제90조제14항을”을 “제90조제15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생 략) <신 설>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특화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광고는 하지 못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

	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신 설>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생 략) <신 설>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까지에서----------.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신 설>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특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5항까지에서----------.
제84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84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의 사후관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성과관리 및 ----------.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	④ ----------

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	⑨ ----------제8항에----------.

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제7항을---------.
⑨ (생 략)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10항까지에서----------.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87조(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9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86조제10항에----------.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6조제4항 및 제9항에도	⑩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9조(실증특례의 취소 등) ①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86조제10항에</u>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u>제86조제11항에</u>----------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6항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 ----------제8항을---------.

⑩ (생 략)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⑫ ----------제11항에----------제11항에----------.
⑫ · ⑬ (생 략)	⑬ · ⑭ (현행 제12항 및 제13항과 같음)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	⑮ ----------제14항에----------. ----------

·도지사등과의 별도 협의를 거쳐 임시허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⑮ (생 략)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⑯ (현행 제15항과 같음) ⑰ ----------제16항까지에서----------. 제97조의2(국제협력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3.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제140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0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41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특화특구위원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위

	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신 설>	제141조의5(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1조의6(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제143조(과태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4. 제90조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제143조(과태료)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0조제15항을---------- ② (현행과 같음)